

노조법 개정 국회 논의 '일부 진전' 본회의까지 멈춰선 안 된다

금속노조 투쟁의 성과로 2·3조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
사용자 범위 확대됐으나 개인 손해청구 금지 등 핵심 내용 빠져

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2·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.

통과된 개정안

사용자 정의(제2조)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'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'로 확대했다.

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조항으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지위에 놓이게 된다.



쟁의행위 범위

'근로조건에 관한 주장 불일치'에서 '근로조건에 관한 주장 불일치'로 수정했다.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한 것에 의의는 있다.

그러나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(제3조) 조항에서 금속노조가 제시한 △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 청구 금지 △노조 존립 불가능한 정도의 손해 청구 금지 △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촉발한 쟁의인 경우 손해 청구 금지 등 핵심 내용을 모두 제외했다. 민주당은 단지 손해배상에 있어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고,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을 지웠을 뿐이다.

금속노조는 법안소위를 거친 개정안이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수준이라 판단한다. 노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논의를 멈춰서는 안 된다. 국회는 본회의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반드시 노조법 2·3조를 개정해야 한다.